

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신고시기	A: 본신고 [] B: 사전신고 []	접수번호				접수일자	년	월	일
신고제품구분	1: 식품 등 [] 2: 식품첨가물 [] 3: 기구 또는 용기·포장 [] 4: 축산물 []	처리기간	식품등: 서류검사 2일, 정밀검사 10일 (진균수시험대상 10일, 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, 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 15일) 축산물: 서류검사 3일, 정밀검사 18일						

수하인	성명	개인통관고유부호
(수입회주)	연락처	
신고인	성명	상호
(구매대행	주소	
영업자)	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	
영업자)	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	
송하인	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	

입항일	년 월 일	선명(기명)
검사(반입) 장소		(☎ - -)
반입일	년 월 일	선하증권(B/L)번호

항번호	제품명	제조회사명	제조국가	총수량 (단위: EA)	제품 URL
항번호	제품명	제조회사명	제조국가	총수량 (단위: EA)	제품 URL
항번호	제품명	제조회사명	제조국가	총수량 (단위: EA)	제품 URL
항번호	제품명	제조회사명	제조국가	총수량 (단위: EA)	제품 URL
항번호	제품명	제조회사명	제조국가	총수량 (단위: EA)	제품 URL
항번호	제품명	제조회사명	제조국가	총수량 (단위: EA)	제품 URL
항번호	제품명	제조회사명	제조국가	총수량 (단위: EA)	제품 URL
항번호	제품명	제조회사명	제조국가	총수량 (단위: EA)	제품 URL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

유의사항

가.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나. 동물용의약품, 발기부전치료제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대행을 요청한 자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은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